

관세청고시 제2024-17호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4-4호, 2024-01-15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4년 4월 4일

관 세 청 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4-17호(2024.4.4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명	비고
556	2024-17호('24.04.11.)	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 3건	
557	2024-17호('24.04.11.)	Dried sweet potato pellet	
558	2024-17호('24.04.11.)	Feed preparation	
559	2024-17호('24.04.11.)	일부 열처리된 낱알 보리	
560	2024-17호('24.04.11.)	일부 열처리된 낱알 아마란스 3건	
561	2024-17호('24.04.11.)	스마트폰용 링홀더	
562	2024-17호('24.04.11.)	MOTOR CONTROLLER 등 4건	
563	2024-17호('24.04.11.)	스마트폰용 Window Glass 2건	
564	2024-17호('24.04.11.)	태블릿PC용 Window Glass	
565	2024-17호('24.04.11.)	Smart Watch	
566	2024-17호('24.04.11.)	Whey	
567	2024-17호('24.04.11.)	Decorative Lamp	

## 556. 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① Plastic frame lantern nets for scallop farming

#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Other article of plastics; Plastic frame lantern nets for scallop farming	품목분류2과-3744 (2013.05.28.)

#### ○ 물품설명

-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(net)안에 플라스틱 판이 결합된 물품으로 가리비 양식에 사용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926.90-9000호

#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5608.19-1000호

#### ○ 변경사유

- 어망이 아닌 수산동식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그물망의 도구이므로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망제품으로 보아 제5608.19-1000호에 분류 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② Fish trapping nets 2건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Fish trapping nets	분석47260-1092 (2000.08.08.)
2	Fish trapping nets	분석47260-1095 (2000.08.08.)

○ 물품설명

- 합성섬유로 만든 망제품으로 미꾸라지 등을 잡는데 사용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5608.19-1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5608.11-1090호

○ 변경사유

- 미꾸라지 등을 포획하기 위한 어망(fishing nets)이므로 합성섬유로 만든 어망으로 보아 제5608.11-1090호에 분류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57. Dried sweet potato pell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Feed preparation; Dried sweet potato pellet	품목분류2과-4848 (2018.07.18.)

### ○ 물품설명

- 건조한 고구마를 분쇄 후 70~90℃에서 성형한 연갈색계 펠릿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909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0714.20-2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펠릿 형태의 건조한 고구마이므로 제0714.20-2000호에 분류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58. Feed prepara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Feed preparation; BOVINE ONE ORAL GEL(60g/tube, 300g/tube); U.S.A	품목분류2과-2325 (2015.04.09.)

### ○ 물품설명

- Microbial concentrate 0.32%, 대두유 51.38%, 옥수수전분 34.84%, 설탕 13.46% 등으로 혼합, 조제한 경구투여하는 사료조제품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909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2099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급여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아 바로 경구투여하는 방식도 보조사료에 포함하므로 그 밖의 조제된 보조사료로 보아 제2309.90-2099호에 분류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59. 일부 열처리된 낱알 보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Barley, partially roasted; ROAST BARLEY TEA; R.KOREA	품목2과-2540 ('16.03.15.)

### ○ 물품설명

- 일부 열처리된 껍질이 있는 낱알상의 볶은 보리(용도 : 침출차 등)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1104.29-200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1003.90-2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이 붙어 있는 낱알상의 겉보리이므로 제1003.90-2000호에 분류 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0. 일부 열처리된 낱알 아마란스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Other worked amaranth; Steamed Amaranth; 썩씨105도, 75분; INDIA	품목분류2과-5595 (2017.04.25.)
2	Other worked amaranth; Steamed Amaranth; 썩씨100도, 20분; INDIA	품목분류2과-5594 (2017.04.25.)
3	Other worked amaranth ; NETHERL	품목분류2과-962 (2016.01.29.)

### ○ 물품설명

- 일부 열처리된 껍질이 있는 낱알상의 아마란스(용도 : 침출차 등)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1104.29-900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1008.90-0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이 붙어 있는 낱알상의 아마란스이므로 제1008.90-0000호에 분류  
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

## 561. 스마트폰용 링홀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IRING ; iRing Masstige	품목분류1과-1128('15.07.09.)

### ○ 물품설명

- 아연합금재질의 '링'과 플라스틱재질의 '플레이트'가 결합된 링홀더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926.90-900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7907.00-909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스마트폰의 그립감 향상 및 거치대 역할을 하는 '링'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복합물이므로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7907.00-9090호에 분류(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2. MOTOR CONTROLL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Digital AC Servo Controller	감정22701-3960 (1989.12.11.)
2	SERVO AMP; MR-J4W2-77B; JP	품목분류3과-7186 (2022.11.03.)
3	SERVO AMP; MR-J4-40A; JP;	품목분류3과-7187 (2022.11.03.)
4	SERVO AMP; MR-J4-40B; JP;	품목분류3과-7188 (2022.11.03.)

### ○ 물품설명

- 전동기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속도 등을 피드백 받아 전동기의 속도와 위치 등을 자동 제어하는 기계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 제8537.10-2000호, ②~③ 제8537.10-509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①~③ 제9032.89-909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전자식 주파수 인버터는 자동제어용 기기로 보아 제9032.89-9090호에 분류(WCO 제70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2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3. 스마트폰용 Window Glass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Window Glasss ;A40300-10036A ; A40300-10036A ; 65.53mm X 127.96mm X 0.6mm ; 중국	품목분류3과-2093 (2014.9.26.)
2	WINDOW GLASS ; V120 ; 118.09-59.59-0.7MM ; CN	품목분류3과-1711 (2015.6.25.)

### ○ 물품설명

-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,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, 홀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지문방지(Anti-Fingerprint) 코팅하고,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 (Black Matrix)로 인쇄한 물품(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)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7.70-1029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7007.19-1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.19-1000호에 분류(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3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4. 태블릿PC용 Window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COVER WINDOW FOR TABLET PC ; GOYA_VE ; TW1000152B ; 중국	품목분류3과-1566 (2015.06.11.)

### ○ 물품설명

- 태블릿PC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,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, 홀가공한 후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(Black Matrix)로 인쇄한 물품(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473.30-909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7007.19-1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.19-1000호에 분류(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3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5. Smart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Black TANY6 Smart Watch	품목분류3과-20132 (2020.12.11.)

### ○ 물품설명

-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시간을 표시하고,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와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며 (전화 발신 및 수신기능은 없음) 심박수와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주는 손목에 차는 기기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9031.80-9099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102.12-1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통신기능(회신할 수 없는 전화 알림 수신등)과 측정기능(심박수 측정 등), 시계 기능을 수행하는 손목 착용 배터리 구동 시계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최종호인 제9102.12-1000호에 분류(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3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6. Whe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Thermojetics performance protein powder;;U.S.	품목분류2과-100709 (2004.07.02.)

### ○ 물품설명

- 대두분리단백질 75.05%, 농축유청단백질 24.50%, 향료(바닐라),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단백질 보충용 조제식료품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106.90-9099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106.10-902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향료가 첨가된 단백질 함량 99% 이상인 분말상의 조제식료품은 제2106호의 조제식료품 중 단백질 농축물로 보아 제2106.10-9020호에 분류(WCO 제70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2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67. Decorative Lamp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(폐지)

제2024-17호 (2024.04.11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Decorative Rain Lamp	감정22701-552 (1989.02.04)

### ○ 물품설명

- 필라멘트 전구가 켜지면 Oil을 실에 흘려주어 비가 오는 듯한 효과를 내는 인물소상 및 인조식물의 장식용 물품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9405.20-100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삭제

### ○ 삭제사유

- 조명기구가 아닌 장식품으로 보아 재질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나, 동 사례는 재질 확인 곤란으로 품목분류가 곤란하므로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하고자 함(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('23.9월)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